

국내전용회선이용약관

2022.11.01

주식회사 케이티

목 차

제 1 장 총 칙

제1조(약관의 적용).....	4
제2조(용어의 정의).....	4

제 2 장 전용계약

제1절 통칙

제3조(전용회선의 종류).....	4
제4조(전용의 구분).....	6

제2절 이용계약의 청약 및 승낙

제5조(청약).....	6
제6조(승낙).....	6
제7조(공동사용의 청약).....	7
제8조(타인 사용의 청구).....	7
제9조(상호접속의 청구).....	8
제10조(구내교환설비와의 접속청구).....	8
제11조(자가통신설비와의 접속청구).....	8
제12조(분기접속의 청구).....	9

제3절 개통및 점검

제13조(전용회선의 개통).....	9
제14조(전용회선의 운용점검).....	9

제 3 장 서비스 제공과 이용

제15조(이용정지).....	10
제16조(이용중지).....	10
제17조(이용 휴지).....	11

제 4 장 계약의 변경

제18조(계약의 변경).....	11
제19조(일시이용중단).....	12
제20조(이용권의 승계).....	12
제21조(계약의 해지 및 해제).....	12
제22조(단말기등의 설치 및 유지보수).....	13

제 5장 요금등

제1절 통칙

제23조(요금등의 종류).....	13
제24조(요금등 산정 방법).....	14
제25조(요금등의 계산 구분).....	14
제26조(요금등의 일할 계산).....	14

제2절 요금등의 청구 및 납입

제27조(요금등의 납입기일).....	15
제28조(요금등의 납입처).....	15
제29조(요금등 납입의 특혜).....	15
제30조(요금등 납입의 연대책임).....	15

제3절 면탈요금등의 징수

제31조(면탈요금등의 징수).....	15
----------------------	----

제4절 요금등의 감면 및 반환

제32조(요금등의 감면).....	16
제33조(미공사분의 계약자부담 시설비의 반환).....	16
제34조(요금등의 할인).....	16

제 6 장 손해배상

제35조(손해배상).....	16
-----------------	----

부 칙

①(시행일).....	17
-------------	----

요 금 표

[별표]

I . 회선전용료.....	21
II . 장비임대료.....	25
III . 분기료.....	25
IV . 실비.....	26
V . 출동비.....	27
VI . 무선설비 전용.....	27
VII . CCTV 영상전송.....	28
VIII . 요금감면 및 할인.....	29

제1장 총칙

제1조(약관의 적용)주식회사 케이티(이하 “케이티”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biz전용회선(이하 “전용회선”이라 합니다) 서비스 이용은 전기통신서비스이용기본약관(이하 “기본약관”이라 합니다)과 이 약관을 함께 적용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전용설비 : 이용계약의 목적물로 되어 있는 전기통신설비
2. 전용회선 : 이용계약에 의하여 계약자가 이용하는 전기통신 회선
3. 수용구역 : 동일 가입구역안에 2이상의 전화교환국이 있는 경우에 전화교환국별로 전용회선을 수용하는 구역을 지정한 지역
4. 분기 : 전용회선의 중도에서 계약자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전용회선을 연결하여 단말기기를 설치하는 것
5. 가입자선로 : 전화국의 주배선반으로부터 계약자의 구내 인입단자까지를 연결하는 선로
6. 회선종단장치(DSU등) : 회선과 단말기기 사이에 연결되어 신호의 변환, 회선과 단말 기기의 접속 또는 개방 등의 기능을 갖는 장치
7. 양자암호서비스 : 데이터전송시 양자암호로 암/복호화하는 서비스
양자역학이 적용된 양자암호통신서비스는 해킹시 인지하여 해킹이 불가함

제 2장 전용계약

제1절 통칙

제3조(서비스 종류)계약자가 전용회선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전용회선서비스

종류 및 규격	내 용	
1. 아날로그 라디오 방송회선	제1규격	전송주파수 대역이 300헬즈부터 3400헬즈까지의 회선
	제2규격	전송주파수 대역이 50헬즈부터 6400헬즈까지의 회선
	제3규격	전송주파수 대역이 50헬즈부터 10000헬즈까지의 회선

	제4규격	전송주파수 대역이 50헬즈부터 15000헬즈까지 (스테레오 방송포함) 의 회선
종류 및 규격		내 용
2. 저속도 회선	제1규격	매초당 300비트까지 비음성통신이 가능한 비상벨 회선
3. 중속도 회선	제1규격	매초당 9600비트까지 음성 및 비음성통신이 가능한 회선
	제2규격	매초당 56/64킬로비트까지 비음성통신이 가능한 회선
4. 고속도 회선	제1규격	매초당 128킬로비트까지 비음성통신이 가능한 회선
	제2규격	매초당 192킬로비트까지 비음성통신이 가능한 회선
	제3규격	매초당 256킬로비트까지 비음성통신이 가능한 회선
	제4규격	매초당 384킬로비트까지 비음성통신이 가능한 회선
	제5규격	매초당 448킬로비트까지 비음성통신이 가능한 회선
	제6규격	매초당 512킬로비트까지 비음성통신이 가능한 회선
	제7규격	매초당 768킬로비트까지 비음성통신이 가능한 회선
	제8규격	매초당 1.024메가비트까지 비음성통신이 가능한 회선
	제9규격	매초당 1.544메가비트까지 비음성통신이 가능한 회선
	제10규격	매초당 2.048메가비트까지 비음성통신이 가능한 회선
5. 초고속도 회선	제1규격	매초당 4메가비트까지 비음성통신이 가능한 회선
	제2규격	매초당 6메가비트까지 비음성통신이 가능한 회선
	제3규격	매초당 8메가비트까지 비음성통신이 가능한 회선
	제4규격	매초당 10메가비트까지 비음성통신이 가능한 회선
	제5규격	매초당 20메가비트까지 비음성통신이 가능한 회선
	제6규격	매초당 30메가비트까지 비음성통신이 가능한 회선
	제7규격	매초당 45메가비트까지 비음성통신이 가능한 회선
	제8규격	매초당 100메가비트까지 비음성통신이 가능한 회선
	제9규격	매초당 155메가비트까지 비음성통신이 가능한 회선
	제10규격	매초당 1기가비트까지 비음성통신이 가능한 회선
	제11규격	매초당 2.5기가비트까지 비음성통신이 가능한 회선
	제12규격	매초당 10기가비트까지 비음성통신이 가능한 회선
	제13규격	매초당 100기가비트까지 비음성통신이 가능한 회선
6. 무선설비 전용	이동체통신, 동시통보용 통신의 전송이 가능한 무선설비 (무선설비에 연결되는 유선회선을 포함)의 전용	

7. CCTV 영상전송	1규격	CCTV 영상을 동선을 사용한 xDSL 방식 등으로 전송하는 서비스
	2규격	CCTV 영상을 광CA를 사용한 xDSL 방식 등으로 전송하는 서비스

나. 양자암호서비스

종류 및 규격		내 용
8. 양자암호 서비스	1기가비트	양자암호를 생성/관리하고 전용회선 제10규격(1Gbps)이하 전송데이터를 암/복호화하는 서비스
	10기가비트	양자암호를 생성/관리하고 전용회선 12규격(10Gbps)이하 전송데이터를 암/복호화하는 서비스

제4조(전용의 구분) ① 제3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전용회선은 이용구간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합니다.

1. 시내전용: 전용회선의 양측에 설치된 단말기기가 동일한 가입구역에 설치된 회선의 전용
 2. 시외전용 : 시내전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구간에 설치된 회선의 전용
- ② 전용회선은 이용기간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합니다.
1. 장기전용 : 계약기간을 1월 이상으로 정하여 이용하는 전용
 2. 단기전용 : 계약기간을 1월 미만으로 정하여 이용하는 전용(제3조 제1,2,3호만 제공)

제2절 이용계약의 청약 및 승낙

제5조(청 약) ① 전용회선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전화, 팩스, e-mail, 방문, 우편 또는 기타 회사가 인정한 방식으로 케이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청약서(케이티가 별도로 정하는 서식)
 2. 법인의 경우 청약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첨부(청약자와 요금납입책임자가 다른 경우에는 요금납입책임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② 케이티는 전용회선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청약 전에 전용회선구성 가능 여부에 대해 전화, 팩스, e-mail, 우편 등으로 문의할 경우 30일 이내에 전용회선 구성 가능 여부 및 불가할 경우 해당 사유를 통보합니다. 다만 30일 이내 통보가 불가할 경우, 고객과 합의하여 정한 기한내에 통보합니다.

③ 양자암호서비스인 경우 제8조~제12조에 해당하는 타인사용, 상호접속, 구내교환설비와의 접속, 자가통신설비와의 접속, 분기접속을 청약할 수 없습니다.

제6조(승 낙)① 케이티는 이용계약의 청약에 대하여 접수 순서에 따라 승낙합니다.

다만, 전기통신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요통신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② 케이티는 청약사항이 기본약관에서 정하는 조건부 가입구역인 경우 청약자가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자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③ 케이티는 이용계약의 청약에 대해서 전용회선이 설치되는 구내 또는 건물 내에 케이티가 전용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전원, 관로, 설치장소 등 설비를 청약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④ 무선설비전용 청약에 대한 승낙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 동시통보용으로 이용하는 무선설비

2. 다수지점(전용구간이 다수구간에 연결되기 때문에 유선통신설비에 의해 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지점)간의 통신용으로 이용하는 무선설비

⑤ 케이티는 청약사항을 승낙한 때에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청약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1. 개통예정일

2. 요금 등에 관한 사항

3. 이용고객의 권리보호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케이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공동사용의 청약)① 전용회선의 공동사용을 청약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용을 하고자 하는자 중에서 대표자 1인을 선정하고 공동사용 할 자가 연서하여 케이티에 청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대표자는 요금납입책임자가 됩니다.

② 하나의 전용회선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연구기관, 교육기관 및 의료기관 등 국가공공 업무 또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상호간

2. 언론사, 방송사, 통신사 및 정기간행물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등록한 자 등

언론, 방송, 출판 관련기관 상호간

3. 상법상 규정에 의한 회사, 상대방회사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 또는 업무상 거래 관계가 있는 자 등 영업상 관련자 상호간

4. 은행법 및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금융기관, 금융결재원 및 회원은행 등 금융기관 상호간

5. 공업단지, 주택단지 및 상업지역 등 일정한 구역 내에서 경제활동을 행하거나 거주하는 자 상호간

6. 위 각호에서 정한 자와 업무상 관계가 있는 자 상호간

③ 케이티는 공동사용자 중에서 부적격자가 있다는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 이를 대표자에게 제시하여 공동사용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표자는 30일 이내에 이의서류를 케이티에 제출하거나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한 공인회계사 중에서 1인을 선임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제8조(타인사용의 청구) 전용회선을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는 것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 국가비상사태하에서 재해의 예방, 구조, 교통·통신 및 전력공급의 확보 또는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군사기관, 경찰기관, 소방기관, 재해대책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서 공공적 업무운영을 위하여 다른 사람과 사용하는 경우

3. 일방향 전송을 하는 경우

4. 별정통신사업자가 사업경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5.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상호접속의 청구) ① 계약자는 1의 전용회선의 단말에 통신설비(구내교환설비)를 포함합니다.) 등을 접속하여 계약자의 다른 회선과 접속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상호접속 청구서를 케이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접속할 장소(전용설비의 단말기기가 설치된 동일구내의 장소에 한합니다. 다만, 직결식으로 접속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2. 상호접속 방법 및 구성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 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낙하지 않습니다. 다만, 별정통신사업자는 제외합니다.

1. 동일인의 전용에 속하지 않는 다른 전용회선 상호간
2. 시외전용회선 양단측과 공중전화교환망 상호간
3. 기술기준에 부적합 할 경우

제10조(구내교환설비와의 접속청구) ① 계약자는 전용회선을 동일구내에 설치되어 있는 구내교환설비(계약자와 구내교환설비의 전화가입자가 동일인 이어야 합니다.)에 접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케이티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자는 전용설비를 타인사용 구내선 전화기가 수용된 구내 교환설비와 접속할 수 없습니다.(제7조 제2항 제1호, 제2호 및 제8조 제4호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③ 시외전용설비 양단측에 구내교환설비를 접속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내 교환설비 1단측에 국선과 접속하지 않는 장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별정통신사업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11조(자가통신설비와 접속청구) 전용회선과 자가통신설비간의 접속은 다음 각호 1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1. 자가전기통신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구내에서 이용하는 경우로서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자와 그의 설립목적사업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간에 이용하는 경우 또는 설립목적사업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상호간에 이용하는 경우
2. 기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목적의 이용을 승인한 경우

제12조(분기접속의 청구) ① 무선설비 전용을 제외한 계약자는 1의 전용회선 중도에서 회선을 분기하여 이용하거나 또는 분기하여 다른 전용회선과 접속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분기접속 청구서를 케이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분기할 장소
2. 분기방법 및 분기구성도

②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 현재 설치된 통상의 전용설비 이외의 특별한 전용설비의

의 신설을 요하는 때에는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승낙할 수 있습니다.

제3절 개통 및 점검

제13조(전용회선의 개통)①케이티는 계약자와 협의하여 지정한 개통예정일에 개통합니다. 이경우 케이티는 개통예정일 전까지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단말기기 상호간 안정, 신뢰성 및 호환성을 확보합니다.

②계약자와 협의가 곤란한 경우 케이티는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청약서 접수후 30일 이내에 전용회선을 개통합니다.

③청약자의 사정에 의하여 개통예정일을 연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통예정일 5일전에 연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④케이티는 개통예정일 또는 청약서 접수후 30일 이내 개통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와 개통일을 다시 정하여 이를 청약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제14조(전용회선의 운용점검)케이티는 기본약관 제11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용회선 개통후에 다음사항을 운용 점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가 설치한 단말기기등 전기통신기자재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지 여부
2.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이용하는지 여부
3. 다른 선로기기 등을 연결하여 당초 계약된 규격 이상으로 이용하는지 여부

제 3장 서비스 제공과 이용

제15조(이용정지)①케이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전용회선 이용의 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1. 요금납부책임자가 전용요금과 가산금 등의 이행최고를 받고 최초의 요금납입기일 익일로부터 1월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2. 케이티가 설치한 설비를 승인 없이 이동, 철거, 변경, 분해하거나 다른 설비 등에

부당하게 접속하여 이용한 경우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비상사태에 처하여 그 설비의 보호에 필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 케이티는 전용의 정지기간중에 그 정지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전용의 정지를 해제합니다.

제16조(이용중지) ①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전용설비를 다른 전기통신업무 또는 중요한 통신업무에 이용할 필요가 있는 때. 전기통신설비의 장애 또는 통화폭주 등으로 통신의 소통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전용회선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단, 양자암호서비스는 중지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전용회선 이용을 중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지사유, 기간, 대상지역, 대상설비 등을 명시하여 지체없이 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③ 제1항의 경우 중지범위와 정도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순위로 이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제 1순위

- 가. 국가안보
- 나. 군사 및 치안
- 다. 민방위경보 전달
- 라. 전파관리

2. 제 2순위

- 가. 재해구호
- 나. 전기통신, 항해안전, 기상, 소방, 전기, 가스, 수도, 수송 및 언론
- 다.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 라. 주한외국공관 및 국제연합기관의 업무

3. 제 3순위

- 가. 자원관리대상업체 및 방위산업체의 업무
- 나. 정부투자기관 및 의료기관의 업무

4. 제4순위 :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전용

제17조(이용휴지)①케이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용회선의 이용을 휴지합니다.

1. 시설 및 기술상 제 18조의 규정에 의한 구외설변 청구에 응할 수 없을 때
 2. 제19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그 전용회선을 타에 전용할 때
- ②케이티는 제1항 각호의 유지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전용회선을 부활합니다.

제4장 계약의 변경

제18조(계약의 변경)①계약자는 이용계약 사항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계약변경청구서를 케이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설치장소
 2. 회선의 종류 및 규격
 3. 전용회선의 이용개시 시각과 이용시간(시간전용에 한합니다.)
 4. 전용기간
 5. 이용구간(회선구성이 가능한 때에 한합니다.)
 6. 단독사용을 공동사용으로 공동사용을 단독사용으로 그 계약을 변경하거나 또는 공동사용의 전용자 수의 증감
- ②설치장소 변경시 기본약관에서 정한 구내설변시의 같은 구내란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하나의 건물과 그 부지
2. 상호간의 최단거리가 100m이내(케이티가 업무수행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m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에 있고 1인의 점유에 속하는 2이상의 건물과 그 부지(도로 또는 하천에 의하여 분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입니다.)

제19조(일시 이용중단)①계약자 사정으로 이용중인 전용회선을 일정 기간동안 이용 중단을 케이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②조건부 가입구역 등의 구외설변 청구에 있어서 계약자 부담 시설비를 납입기일내에 납입하지 않거나 시설을 부담하지 못하는 경우는 이용중단으로 봅니다.
- ③케이티는 기본약관 제33조 제2항의 일시이용 중단기간을 초과 한 때에는 그 전용

회선을 타에 전용할 수 있습니다.

④ 일시이용중단기간이 만료되어 부활신청후 1개월이내 설치장소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제20조(이용권의 승계) ① 상속, 합병, 분할, 영업양수 등으로 계약자의 지위승계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사업자 등록증사본과 지위승계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케이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요금 납입을 책임질 수 있는 대표자 1인을 선정하여 지위승계 신고시 대표자 선정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21조(계약의 해지 및 해제) ① 계약자는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전일까지 이용계약 해지 청구서를 케이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케이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계약을 해제합니다.

1. 이용계약이 확정된후 장치비, 계약자부담시설비 등 납입하여야 할 금액을 소정의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때

2. 기본약관 제 9조의 규정에 의한 승낙유보 사유에 해당하는 청약임이 확인된 때

③ 케이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가 부당한 보수를 받을 목적으로 전용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통신을 매개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다른 선로기기등을 부착하여 당초 계약된 규격 이상으로 이용하여 전용요금을 불법 면탈하였을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제14조 규정에 의한 전용설비의 운영점검을 거부 또는 방해한 때

4. 서비스 이용이 정지된 후 그 정지사유를 1월이내에 해소하지 않거나 당해년도

3회이상 정지당한 때

제22조(단말기등의 설치 및 유지보수) ① 전용회선의 구내통신선로설비 및 단말기기 등 이용자전기통신설비의 설치와 유지보수는 계약자가 담당합니다. 다만 케이티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②계약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말기기를 설치하거나 변경등을 하는 때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그 설치 및 설치장소 변경 등의 공사는 전기통신공사업법령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제5장 요금등

제1절 통칙

제23조(요금등의 종류)①계약자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케이티에 납입해야 할 요금등의 종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습니다.

- 1.회선전용료 : 전용회선을 이용하는 대가로 납입하는 요금
 - 2.장비임대료 : 케이티가 제공하는 종단장치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납입하는 요금
 - 3.분기료 : 전용회선을 중도에서 분기하여 단말기기를 설치 이용하는 경우 매월 일정액을 납입하는 요금
 - 4.장치비: 서비스의 신규청약, 설변, 규격변경 청구등에 대한 설치 또는 이전에 실제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 5.계약자 부담시설비 :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계약자 부담 조건으로 송낙시 장치비 외에 부담해야 하는 비용
 - 6.출동비 : 회선 장애 등 고객요청으로 출동 시 출동비용
 - 7.양자암호서비스이용료 : 양자암호서비스를 이용하는 요금
- ②제3조 규정 및 위 제1항에 의한 요금 및 적용기준, 적용대상 등은 "별표" 와 같습니다.

제24조(요금등 산정방법)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전용자가 단기전용의 기간내에 그 계약을 해지하는 때에는 단기전용 요금을 적용 산정하며, 이 경우 그 금액이 장기전용의 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액으로 합니다.

②회선전용료는 종류 및 규격에 따라 시내 및 시외요금으로 구분하고 시내 수용구역 외 및 시외요금은 거리단계별 요금으로 하며, 거리는 케이티가 별도로 정하여 공시한 과금거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③전용회선을 중도에서 분기하여 이용하는 때에는 그 분기된 구간에 따라 전용회선료 를 별도로 산정합니다.

④시간단위 전용요금 산정 : 삭제

⑤이용의 정지, 휴지로 인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기간의 요금은 산정하지 않습니다.

⑥일시이용중단회선은 일시이용중단기간중 회선전용료의 30%를 납부 하여야 합니다

제25조(요금등의 계산구분)전용회선서비스에 대한 요금등은 즉납, 일액, 월액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계산합니다.

1. 단기전용의 일액으로하는 요금등의 계산은 0시부터 24시까지를 1일로 하며, 서비스 제공의 개시시각 또는 종료시각이 1일의 중도인 경우에는 1일로 계산합니다. 이 경우 장기전용의 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액으로 합니다.

2. 장기전용의 월액으로 하는 요금등의 계산은 매월1일 부터 말일(이하 "요금월"이라 합니다)까지를 1월분의 요금 등으로 하되 서비스 제공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당해 요금월의 중도인 경우에는 사용한 일수로 계산합니다. 이 경우 서비스 개시일, 변경 일은 사용한 일수에 포함하며, 종료일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제26조(요금등의 일할계산)①요금 등의 일할계산을 하는 경우에는 요금등의 월액을 그 요금월의 일수로 나눈액을 월액의 일할로 합니다.

②계약자의 서비스에 관한 월정액 요금등이 요금월의 중도에 변동이 있는 때는 그 요금월의 그 전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월정액의 일할로써 산정합니다.

제 2절 요금등의 청구 및 납입

제27조(요금등의 납입기일)①전용회선이용과 관련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납입해야 하는 제23조 제1항의 요금등은 사용월의 말일이내에 케이티가 별도로 납입 기일을 정하여 청구합니다.

②요금납입일이 일정하지 않는 단기 및 계약자부담시설비 등에 대한 요금 등은 케이티가 별도로 납입기일을 정하여 청구합니다.

제28조(요금등의 납입처)계약자는 납입청구서에 의한 요금등을 납입기일내에 케이티가

지정하는 장소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29조 (요금등 납입의 특례) 요금등의 납입책임자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주한외국기관 또는 케이티가 정하는 경우에는 중앙불(상급기관 또는 주된 사업소, 사무소 등에서 일괄하여 납입하는 것을 말합니다.)로 일괄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30조(요금등 납입의 연대책임) 제7조의 공동사용 전용회선서비스를 제공받은 이용자는 그 납입하여야 할 요금등에 대하여 각각 연대책임으로 합니다. 이경우에 요금 청구는 요금납입책임자로 지정된 대표자에게 청구합니다.

제3절 면탈요금등의 징수

제31조(면탈요금등의 징수) ① 케이티가 면탈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습니다.

1. 계약변경을 하지 않고 전용설비의 설치장소를 변경하여 요금 등을 면탈한 때
2. 계약변경을 하지 않고 전용설비에 다른 선로기기 등을 연결하여 계약당시 규격이 상으로 변조하여 요금 등을 면탈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탈요금 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기본약관 제41조 및 본 약관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4절 요금등의 감면 및 반환

제32조(요금등의 감면) ① 국가비상사태시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그 설비가 멸실 된 경우 단말기기 설치장소 변경에 따른 장치비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② 전용회선 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군사·치안기관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과 국가지도 통신 용 그리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자가통신망 일부를 케이티의 전기통신망에 통합하는 경우에 그 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전용회선
2. 체신사업 경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인명, 재산의 위험방지 또는 재해의 긴급구조구난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전시에 군 작전상 필요하여 지원, 제공하는 경우

5. 정보통신의 이용촉진과 보급확산을 위해 필요한 경우

6. 기타 사업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의하여 요금등의 감면을 적용받는 구체적인 대상기관, 적용방법 및 감면
요율은 "별표"와 같습니다.

제33조(미공사분의 계약자부담시설비의 반환) 케이티는 전용설비의 설치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전용계약의 해제 또는 전용설비의 설치장소 변경 등 사유로 인하여 그 설치공사를 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계약자부담 시설비를 반환합니다.

제34조(요금등의 할인) 케이티는 "별표"의 구분에 의하여 전용요금을 할인 합니다.

제6장 손해배상

제35조(손해배상) ① 계약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계약자가 케이티에 통지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케이티가 그 사실을 스스로 인지한 날로부터 2시간이상 계속하여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회선이용료의 최저 3배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자와 협의하여 배상하며, 이외의 경우에는 월액 범위내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에 의거 배상합니다. 다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유가 불가항력 또는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 전항의 배상방법은 계약자가 납입해야 할 요금중에서 감액처리 합니다.

③ 계약기간별 서비스요금이 지정된 경우 계약기간 이내 해지시 위약금이 발생하며 위약금은 별표와 같습니다.

④ ③항의 계약기간 중 제15조(이용정지), 제16조(이용중지), 제17조(이용휴지), 제19조(일시 이용중단)이 발생된 경우는 이용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제18조(계약의 변경)는 양사간 협의시 가능합니다.

부칙

(1992. 3. 11 공시 제13호)

①(시행일) 이 약관은 공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②(폐지규정) 종전의 공중전기통신설비의 전용 및 대여규정은 이를 폐지합니다.

③(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약관 시행전에 종전의 공중전기통신설비의 전용 및 대여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절차, 결정 및 공시등은 이 약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봅니다. 데이터통신에 관한 회선의 전용은 데이터통신에 관한 이용약관을 준용합니다.

부칙

(1992. 8. 1 공시 제22호)이 약관은 공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1993. 2. 9 공시 제7호)이 약관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1994. 1. 10 공시 제4호)

①(시행일)이 약관은 공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②(경과조치)이 약관 시행이전에 행한 처분등에 대하여는 종전규정에 의합니다.

부칙

(1994. 3. 1 공시 제14호)

이 약관은 공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1996. 12. 31 공시 제50호)

이 약관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1997. 12. 30 공시 제48호)

①(시행일)이 약관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②(경과조치)이 약관 시행전에 계약한 광대역회선은 본 약관 시행일로 부터 3월 이내에 다른 전용회선으로 변경해야 하며, 변경전까지는 종전요금을 적용합니다.

부칙

(1998. 3. 21 공시 제8호)

①(시행일)이 약관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②(경과조치)이 약관 시행에도 불구하고 기간통신사업자의 회선설비제공대가 산정방법은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 기준고시9제1996-113호('96.12.27)를 개정하기전까지는 동고시 부칙1 제3조 제3항을 적용합니다.

부칙

①(시행일)이 약관은 2000년 8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②(경과조치)이 약관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국가지도통신용회선은 2000년도 말까지 요금을 면제합니다.

부칙

①(시행일)이 약관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②(경과조치)이 약관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국가지도통신용 회선은 2001년도 말까지 회선전용료의 65%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2년 1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경과조치) 이 약관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2002년도 국가지도통신용 회선은 회선전용료의 70%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2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2년 9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3년 2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경과조치) 이 약관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 국가지도통신용 회선은 회선 전용료의 40%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경과조치) 이 약관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2004년도 국가지도통신용 회선은 회선 전용료의 30%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4년 12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5년 3월 16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경과조치) 이 약관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 국가지도통신용 회선은 중속도회선 회선전용료의 30%, 고속도 및 초고속도 회선 회선전용료의 27%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5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경과조치) 이 약관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 국가기관 통신용 회선의 감면율은 2006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합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경과조치) 이 약관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국가지도 통신용 회선의 감면율은 2007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합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0년 6월 4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3월 9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경과조치) 이 약관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자. 국가정보통신서비스 (GNS 3.0)'에 관한 사항은 2016년 8월 1일 이후 가입/전환 고객부터 소급 적용합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3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5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요금 표

I. 회선전용료

1. 아날로그 라디오방송회선

* 부가가치세 포함(단위:원)

종별		장기전용 (월액)			
		제 1 규격		제 2 규격	
		단방향	양방향	단방향	양방향
시내	수용구역내	32,010	48,070	48,070	72,050
	수용 구역외	1~6 km	36,190	54,340	54,340
		7~12 km	37,620	56,430	56,430
		13 km~	39,050	58,520	58,520
시외		~10km	99,110	148,610	
		~30 km	173,360	259,930	
		~50 km	242,000	363,000	
		~100 km	382,250	573,210	
		~200 km	433,510	650,210	
		~300 km	485,870	728,750	
		~400 km	524,590	786,830	
		401 km~	550,880	826,320	
종별		장기전용 (월액)			
		제 3 규격		제 4 규격	
		단방향	양방향	단방향	양방향
시내	수용구역내	64,020	96,030	96,030	144,100
	수용구역외	1~6 km	72,380	108,570	108,570
		7~12 km	75,240	112,750	112,750
		13 km~	77,990	116,930	116,930
시외		~10km	198,220	297,330	
		~30 km	346,610	519,860	
		~50 km	484,000	725,890	
		~100 km	764,390	1,146,640	
		~200 km	867,020	1,300,530	
		~300 km	971,740	1,457,610	
		~400 km	1,049,180	1,573,770	
		401 km~	1,101,760	1,652,640	

○ 적용방법

- 시외전용 : 단, 양방향에 관계없이 동일요금 적용
- 스테레오 라디오방송회선 : 해당 라디오방송회선 규격요금의 2배 적용

2. 저속도/중속도/고속도/초고속도회선

* 부가가치세 포함(단위:원)

속도	시내	장기전용(월액)					
		시외					
		10Km 이내	30Km 이내	50Km 이내	100Km 이내	200Km 이내	201km 초과
50bps ~ 9.6Kbps (2 선식)	60,720	154,570	270,330	377,520	596,240	676,230	757,940
50bps ~ 9.6Kbps (4 선식)	91,340	154,570	270,330	377,520	596,240	676,230	757,940
56/64Kbps	175,340	297,330	519,860	725,890	1,146,640	1,300,530	1,457,610
128Kbps	193,930	315,260	556,270	776,930	1,238,490	1,517,230	1,700,490
256Kbps	329,340	540,540	953,700	1,331,880	2,123,220	2,601,060	2,915,220
512Kbps	457,930	765,710	1,351,020	1,886,830	3,007,840	3,684,780	4,129,840
1.024Mbps	628,760	1,016,180	1,793,000	2,503,930	3,991,680	4,889,940	5,480,640
1.544Mbps	785,950	1,270,280	2,241,250	3,129,940	4,989,600	6,112,480	6,850,800
2.048Mbps	997,920	1,693,670	2,988,260	4,173,180	6,652,800	8,150,010	9,134,400
4Mbps	1,319,450	2,151,380	3,795,000	5,300,680	8,449,100	10,347,040	11,597,520
6Mbps	1,706,100	2,781,900	4,907,100	6,854,100	10,925,200	13,379,300	14,996,300
8Mbps	2,198,350	3,584,790	6,322,470	8,829,700	14,074,610	17,235,900	19,319,520
10Mbps	2,466,200	4,021,600	7,092,800	9,905,500	15,789,400	19,335,800	21,673,300
20Mbps	3,494,700	5,362,500	9,458,900	13,207,700	21,051,800	25,781,800	28,897,000
30Mbps	4,317,500	6,703,400	11,823,900	16,509,900	26,316,400	32,227,800	36,121,800
45Mbps	5,844,300	9,727,300	17,155,600	23,955,800	38,183,200	46,762,100	52,411,700
100Mbps	8,328,100	12,067,000	21,281,700	29,719,800	47,368,200	58,011,800	65,019,900
155Mbps	11,690,800	17,108,300	30,169,700	42,128,900	67,149,500	82,234,900	92,170,100
1Gbps	14,191,100	21,596,300	38,085,300	53,182,800	84,767,100	103,811,400	116,352,500
2.5Gbps	20,166,300	30,488,700	53,768,000	75,080,500	119,672,300	146,557,400	164,263,000
10Gbps	28,794,700	41,356,920	72,933,680	101,843,610	162,331,340	198,799,750	222,816,990
100Gbps	115,178,800	165,427,680	291,734,740	407,374,440	568,159,700	695,799,140	779,859,460

○ 적용방법

- (저속도회선) 이용대상 : 보안 및 경비 목적의 비상밸용 회선
- (중속도회선) 시내전용 6선식 : 2선식 회선전용료의 2배 적용
- (저속도/중속도회선) 시외전용 : 선식에 관계없이 동일요금 적용
- (고속도/초고속도회선) 시내/시외 : 4선식 1회선 기준

※ 단, 4M~30M, 100M는 Eos회선(Ethernet 방식)으로 서비스 제공

☞ 단기전용회선의 요금(장비임대료 포함)

단기전용회선의 요금은 개통 첫째날 장기사용 월액의 20%, 둘째날부터는 매 1일마다 장기사용 월액의 3.33%를 적용함. 이 경우 그 액수가 장기 사용의 월액을 초과 할 때에는 장기사용의 월액으로 합니다.

II. 장비임대료

구 분	장기전용(월액)	비 고
○ 56/64Kbps 회선이하 제공용	4,400 원	장비 1 대당 적용요금
○ 128Kbps~1024Kbps 회선 제공용	8,800 원	

- 백업기능 등이 추가된 특수회선 종단장치는 실비 적용

III. 분기료

구 분	장기전용(월액)
○ 중속도(제 1 규격) 음성회선, 라디오방송회선 (제 1 규격)	4,400 원
○ 라디오방송회선(제 2,3 규격)	27,500 원
○ 라디오방송회선(제 4 규격)	33,000 원

- 회선분기시 분기개소에서 분기단말까지의 회선에 대한 요금은 해당 회선 전용료를 별도로 적용함

IV. 실비

1. 장치비

- 개념 : 서비스의 신규청약, 설변, 규격변경 청구등에 대한 설치 또는 이전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

- 요금 * 부가가치세 포함

대상서비스	신규 (1회선기준)	설변(1단축기준)		비고
		구내	구외	
○ 아날로그라디오방송회선, 저속도회선, 중속도회선	61,600 원	11,000 원	30,800 원	
○ 고속도회선(128K~2.048M)	220,000 원	55,000 원	110,000 원	
○ 초고속도회선(~40Mbps 까지)	1,100,000 원	165,000 원	550,000 원	
○ 초고속도회선(45Mbps 이상~)	2,134,000원	319,000 원	1,067,000 원	○ 4선식 기준 ○ 라디오방송회선은 양방향 기준

- 적용방법

- 2선식(라디오방송회선 단방향 포함) : 4선식 요금의 0.5배
- 6선식 : 4선식 요금의 1.5배

* 실제로 설치공사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며, 제18조에 의거 고속회선 규격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만 청구합니다.

2. 계약자 부담 시설비

- 개념

전기통신설비의 여유가 없는 경우에 전용계약의 청약 또는 설치장소 변경의 승낙을 얻은자가 장치비외에 그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납입하여야 하는 실비

- 산정 방법

- 실비로 산정(부가가치세 별도)
- 선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각각 분담하여야 할 시설비는 실비로 산정한 시설비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회선수로 나눈액에 전용회선수를 곱하여 산정

- 기설설비의 이용에 대한 분담금

- 시설자부담으로 설치한 설비를 그 설치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한하여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기설설비를 설치한 때에 이용한 것으로 보고 그 설비에 대한 분담금을 납입. 다만, 기설설비의 시설자가 새로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설비의 분담을 하지 않는 것에 동의 한 경우는 그러하지 않음
- 분담금의 산정은 실비로 산정된 시설비 총액을 그 시설을 설치한 때의 전용 회선수와 새로 이용하는 전용회선수를 합하여 나눈액을 새로 이용하는 전용 자의 전용회선수로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함.
- 기설설비의 이용을 위한 시설비의 납입이 있을때에는 그 시설비를 기설설비의 설치자에게 반환함.

V. 출동비

- 개념

- 회선 장애 등 고객요청으로 출동 시 출동비용

- 적용 기준 : 출동 건별(부가세포함)

- 주간 16,500원, 야간/공휴일 24,750원

- 적용 방법
 - 출동 기준 익월 청구시 포함하여 청구
- 면제 기준
 - KT 사유로 인한 장애
 - 천재지변에 의한 KT시설 복구
 - 고객사유로 인한 장애 시 월1회, 최대 년 3회 면제

VI. 무선설비 전용

- 개념 : 무선설비 사용대가로 납입하여야 하는 실비
- 요율 * 부가가치세 별도(단위:원)

구 분	요 금
전용료	$\{(기본설비 또는 장치비 \div 내용년수) + 이자비 + (설비비 또는 장치비 \times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 년간시설관리비(년간시설관리용 물자비 + 동 인건비 + 동 기타비용)\} \times \{1 + 0.07(\text{간접비})\} \div 12 \text{ 월}$
장치비	(물자비 + 인건비 + 부속설비 + 기타 비용) $\times \{1 + 0.07(\text{간접비})\}$

- 적용 방법
 - 전용료 : 요금 공식에 의해 정해진 실비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이용하는 비용으로 매월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다만, 중도인경우는 일할계산
 - 장치비 : 장치에 대한 설치 및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VII. CCTV 영상전송

- 이용료 부가가치세 포함(단위:원)

구 분	1 규격(동선)	2 규격(광 CA)	비 고
시내전용	수용구역내	132,000 원	1 회선당 카메라 1 대
	수용구역외	176,000 원	“

* 동일장치에 카메라 추가 설치시 1 대당 60% 요금적용

- 장치비 : 110,000 원/1 단축기준(개통, 설변, 규격변경, 카메라 추가시 청구)
- 장비임대료 : 8,800 원/월
- 기타 시설비 : 카메라, 모니터, 관제센타 구축, 관로시설 인입 등 부대장비에 대한 설치 비용은 실비계산

VIII. 양자암호서비스

- 이용대상 : 이용중 또는 이용 예정인 kt 서비스에 접속하여 사용
※ 이용중 또는 이용 예정인 kt 서비스 이용료 별도
- 양자암호이용요금 항목: 양자채널이용료+ 양자장비임대료(단위:원,vat 포함)
가)양자채널이용료 : 규격요금동일(1 기가비트/10 기가비트)

계약기간	~50km	~100km	~200km	~300km	300km 초과
3년	89,100,000	168,300,000	205,700,000	303,600,000	352,000,000
5년	56,100,000	104,500,000	126,500,000	184,800,000	214,500,000
7년	39,600,000	70,400,000	96,800,000	140,800,000	162,800,000

※ 상/하위간 접속용 회선/광코어 및 kt 국간 양자암호장비 이용

- 나)양자장비임대료

계약기간	1G	10G
3년이상	16,500,000	17,600,000
5년이상	15,950,000	17,050,000

※고객 택내 구성되는 양자암호용 장비 이용

- 다)장치비 : 신규 1회선 기준 2,134,000 원(변경은 가능시 협의 진행)

※ 도서지역과 안정성을 위한 지중화/이원화 등 인프라투자 발생시는 장치비 외
설치소요비용에 따른 별도의 요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 라)위약금 : 계약기간 중 해지시 청구되는 잔여계약금(잔여계약회선료)

※위약금 산식 = 월이용료 * [계약기간(개월)-이용기간(개월)] * 100%(or 80%)

.80%기준 : 3년약정 중 2년사용, 5년약정 중 3년이용, 7년 약정 중 5년이용

IX. 요금감면 및 할인

1. 요금 감면

- ※ 요금감면을 적용할 경우, 부가세를 제외한 회선전용료 대상으로 감면 적용 후
최종금액에 대하여 부가세 포함
- ※ 양자암호서비스는 요금 감면 및 할인을 적용하지 아니함

가. 군사 및 치안기관 등

- 적용대상 서비스 : 중속도(제1규격) 음성회선
- 적용대상기관 : 군사, 치안기관(미8군포함), 수방 및 재해대책기관, 국가정보원, 청와대 및 국무총리 경호용, 민방공 및 소방기관
- 감면율 : 회선전용료 30%(장치비 제외)

나. 국가기간통신망 통합기관

- 감면대상기관 : 주식회사 케이티와 국가기간통신망 통합협정을 체결한 기관
- 감면대상 서비스 및 감면율 : 주식회사 케이티와 감면대상 기관간의 협정서에 의합니다.

다. 수사기관이 통신비밀보호법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감면율 : 회선전용료의 50%

라. 정보통신의 이용촉진과 보급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전용통신

- 감면대상
 - 국가기관 또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정보문화의 확산 및 새로운 기술의 도입, 새로운 역무 또는 전기통신망의 고도화등을 위하여 추진하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
 - 정보이용의 활성화, 정보문화 확산 및 정보통신에 관한 훈련,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 적용대상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자
- 감면율 : 시외회선전용료의 30%

마. 체신사업경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 감면대상회선 : 체신사업과 관련된 시외전용회선
- 감면율 : 회선전용료의 30%

바. 기간통신사업자 시내 설비제공회선

- 감면대상 : 기간통신사업자의 시내 설비제공 회선용
- 감면율 : 회선전용료의 5%

사. 보도용 통신을 위한 전용회선

- 감면대상 :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속 FAX 용 전용회선
- 감면율 : 시내 40%, 시외 50%
- 대상회선 : 고속도회선 제9, 10 규격(고속 FAX 용에 한함)

아. 국가지도통신용 전용회선

○ 감면대상 : 국가지도통신용 운용업무 협정에 의한 회선

○ 감면율 : 중속도회선 30%

자. 기본/백본/CCTV 전송 회선서비스 (2019.7.1 이후 가입회선에 한함)

1) 적용대상기관 : 국가기관(행정기관, 입법기관, 사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및
준정부기관

2) 기본회선서비스

가) 감면요금표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구분	시내	시외					
		30Km 이내	50Km 이내	100Km 이내	200Km 이내	300Km 이내	300Km 초과
9.6Kbps	52,800	168,300	235,400	371,800	422,400	473,000	510,400
64Kbps	105,600	337,700	470,800	744,700	844,800	947,100	1,021,900
256Kbps	198,000	601,700	840,400	1,337,600	1,637,900	1,834,800	1,983,300
384Kbps	231,000	702,900	977,900	1,558,700	1,909,600	2,145,000	2,313,300
512Kbps	276,100	782,100	1,094,500	1,588,400	2,322,100	2,600,400	2,809,400
768Kbps	321,200	789,800	1,117,600	1,618,100	2,732,400	3,064,600	3,306,600
1Mbps	326,700	798,600	1,141,800	1,646,700	3,036,000	3,454,000	3,733,400
1.5Mbps	328,900	801,900	1,152,800	1,662,100	3,050,300	3,627,800	3,903,900
2Mbps	331,100	805,200	1,161,600	1,674,200	3,061,300	3,763,100	3,910,500
3Mbps	429,000	915,200	1,312,300	1,725,900	3,271,400	3,846,700	3,958,900
4Mbps	526,900	1,050,500	1,450,900	2,051,500	3,379,200	3,958,900	3,987,500
5Mbps	623,700	1,185,800	1,658,800	2,310,000	3,556,300	4,145,900	4,598,000
6Mbps	651,200	1,248,500	1,747,900	2,495,900	3,746,600	4,383,500	4,991,800
7Mbps	696,300	1,335,400	1,870,000	2,670,800	4,008,400	4,677,200	5,341,600
8Mbps	712,800	1,465,200	1,996,500	2,851,200	4,279,000	4,991,800	5,705,700
9Mbps	773,300	1,571,900	2,158,200	3,104,200	4,562,800	5,304,200	6,061,000
10Mbps	836,000	1,681,900	2,322,100	3,362,700	4,840,000	5,606,700	6,404,200
12Mbps	860,200	1,918,400	2,666,400	3,501,300	4,998,400	5,834,400	6,667,100
14Mbps	893,200	2,053,700	2,858,900	3,748,800	5,357,000	6,250,200	7,146,700
16Mbps	951,500	2,283,600	3,140,500	4,759,700	5,705,700	6,525,200	7,613,100
18Mbps	1,010,900	2,526,700	3,436,400	5,051,200	6,062,100	6,888,200	8,146,600
20Mbps	1,069,200	2,673,000	3,633,300	5,343,800	6,417,400	7,251,200	8,549,200
22Mbps	1,148,400	2,971,100	3,990,800	5,628,700	6,836,500	8,033,300	9,116,800
24Mbps	1,223,200	3,180,100	4,279,000	6,114,900	7,330,400	8,613,000	9,775,700
26Mbps	1,292,500	3,358,300	4,522,100	6,461,400	8,110,300	9,104,700	9,816,400
28Mbps	1,355,200	3,393,500	4,889,500	6,871,700	9,178,400	10,005,600	10,098,000
30Mbps	1,414,600	3,564,000	5,142,500	7,331,500	9,722,900	10,599,600	10,697,500
35Mbps	1,467,400	3,757,600	5,242,600	7,486,600	9,961,600	10,857,000	11,425,700
40Mbps	1,521,300	3,953,400	5,325,100	7,612,000	10,171,700	11,097,900	12,175,900

45Mbps	1,626,900	4,232,800	5,695,800	8,159,800	10,441,200	11,389,400	13,018,500
50Mbps	1,695,100	4,307,600	5,797,000	8,284,100	10,605,100	11,591,800	13,256,100
55Mbps	1,749,000	4,492,400	6,047,800	8,640,500	10,772,300	12,096,700	13,839,100
60Mbps	1,800,700	4,681,600	6,301,900	9,000,200	10,939,500	12,593,900	14,413,300
65Mbps	1,872,200	4,772,900	6,552,700	9,358,800	11,298,100	13,104,300	14,984,200
70Mbps	1,944,800	4,863,100	6,806,800	9,719,600	11,660,000	13,619,100	15,561,700
75Mbps	1,953,600	4,936,800	6,847,500	9,765,800	11,716,100	13,682,900	15,632,100
80Mbps	1,962,400	4,948,900	6,888,200	9,812,000	11,772,200	13,746,700	15,702,500
85Mbps	1,971,200	4,961,000	6,928,900	9,858,200	11,828,300	13,810,500	15,772,900
90Mbps	1,980,000	4,973,100	6,969,600	9,904,400	11,884,400	13,874,300	15,843,300
100Mbps	1,998,700	4,998,400	7,051,000	10,000,100	11,996,600	14,001,900	15,989,600
155Mbps	2,517,900	5,925,700	8,294,000	11,916,300	14,216,400	16,608,900	18,976,100
200Mbps	2,816,000	7,040,000	9,859,300	14,073,400	16,904,800	19,699,900	22,528,000
300Mbps	3,476,000	8,690,000	12,170,400	17,395,400	20,868,100	24,348,500	27,832,200
400Mbps	3,757,600	9,774,600	15,037,000	18,784,700	22,559,900	26,324,100	30,075,100
500Mbps	4,038,100	10,506,100	16,159,000	20,200,400	24,230,800	28,277,700	32,305,900
622Mbps	4,381,300	11,389,400	17,531,800	21,896,600	26,309,800	30,685,600	35,047,100
700Mbps	4,680,500	12,163,800	18,726,400	23,387,100	28,102,800	32,775,600	37,417,600
800Mbps	5,061,100	13,158,200	20,255,400	25,300,000	30,347,900	35,409,000	40,488,800
900Mbps	5,362,500	13,557,500	21,051,800	27,487,900	35,542,100	38,907,000	41,108,100
1Gbps	5,651,800	13,874,300	21,747,000	29,715,400	39,762,800	40,880,400	41,999,100
1.5Gbps	6,969,600	18,917,800	26,416,500	33,499,400	41,119,100	47,480,400	49,383,400
2Gbps	7,310,600	19,586,600	27,109,500	34,569,700	41,856,100	48,594,700	50,705,600
2.5Gbps	7,652,700	22,192,500	28,256,800	36,114,100	44,227,700	51,477,800	57,129,600
5Gbps	9,407,200	26,260,300	34,739,100	41,741,700	52,143,300	55,803,000	65,844,900
10Gbps	12,919,500	36,061,300	49,294,300	62,629,600	74,290,700	84,194,000	96,443,600

나) 단기이용 : 기본회선서비스 대상 (할인 적용 불가)

$$\text{단기회선이용요금} = (\text{기준요금}/30\text{일} * \text{사용일수})$$

- ※ 단기이용은 2M 이상부터 제공, 설치 및 철거비 별도 협의
- ※ 설치 및 철거비 산정기준 : 장비투자비, 제공거리에 따른 선로설비, 루트의 이원화 여부 등의 직접비 요소와 인건비 및 제반경비요소를 고려하여 산정

다) 이용요금 할인

- 장기계약 할인

구분	2년	3년	5년
할인율	7%	12%	14%

- 상기 장기계약할인율은 2016.8.1일 이후 청약건에 한하여 적용
 - 장기계약할인은 다량이용과 다회선이용 할인 중 한가지와 중복 적용
 - 계약기간 만료전 해지시 할인반환금을 부과합니다.
- * 할인반환금=(할인전 월이용료×사용개월수)×(계약기간 할인율-사용기간 할인율)

○ 다량이용 할인(부가세전 월 납부액 기준 이용요금 할인)

구분	5백~1천만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3억원	~5억원	~10억원	~15억원
할인율	2%	3%	4%	6%	8%	10%	12%	15%

○ 다회선이용 할인(이용회선수 기준 이용요금 할인)

구분	3~9회선	10~49회선	50~99회선	100회선 이상
할인율	4%	6%	7%	8%

- ※ 다량이용 할인과 다회선이용 할인은 중복 적용 불가(선택 적용)
- ※ 다량이용 할인과 다회선이용 할인은 이용서비스별 요금납입 책임자를 기준으로 적용
(단, 고객요청에 의하여 여러 개의 요금청구서로 분리 청구되는 경우는 청구서 단위로 적용)

○ 예비회선 할인

구 분	용도설명		할인율
재해복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의 재해대비 복구회선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평시에도 재해복구 훈련 등 주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50%
이중화	부하분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에서 장애대비용으로 2개 회선을 운영하며 평상시 양쪽회선에 트래픽이 분산. 전송되다가 장애 시는 정상회선으로 트래픽이 전부 전송됨 1회선이 적정대역폭을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정 	40%
	예비백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대비용으로 2개 회선을 주. 예비 개념으로 운영 평상 시 예비회선에는 트래픽이 전송되지 않고 장애시에만 트래픽이 전송됨 	50%
기타	3중화 구성, 과부하 트래픽 수용 등 기관의 환경에 따라 특수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업자와 협의

- 예비회선은 장기계약, 다량이용 및 다회선이용 할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망분리회선 할인 : 기본회선서비스 대상

구분	2회선	3회선	4회선 이상
인하율(%)	15%	17%	20%

- ※ 망분리회선의 구간별 합산요금에 대하여 해당 인하율만큼 인하하여 저렴한 요금으로 제공
- ※ 동일루트, 동일장비를 통해 사용하는 추가회선에 적용
- ※ 다량/다회선 할인 중복 적용 불가

3) 백본회선서비스

가) 감면요금표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구분	시내	시외					
		30Km 이내	50Km 이내	100Km 이내	200Km 이내	300Km 이내	300Km 초과
2Mbps	206,800	654,500	914,100	1,458,600	1,818,300	2,033,900	2,200,000
45Mbps	1,467,400	4,000,700	5,333,900	8,099,300	9,692,100	10,573,200	11,414,700
100Mbps	1,907,400	4,948,900	6,980,600	9,900,000	11,875,600	13,861,100	15,830,100
155Mbps	2,492,600	5,866,300	8,210,400	11,797,500	14,074,500	16,442,800	18,572,400
200Mbps	2,787,400	6,969,600	9,760,300	13,932,600	16,735,400	19,573,400	20,759,200
300Mbps	3,146,000	8,377,600	11,314,600	17,221,600	20,551,300	23,056,000	23,447,600
400Mbps	3,465,000	9,112,400	13,048,200	18,596,600	22,334,400	24,233,000	26,134,900
500Mbps	3,782,900	9,847,200	14,186,700	19,998,000	23,988,800	26,563,900	28,822,200
600Mbps (622Mbps)	4,103,000	10,582,000	15,323,000	21,677,700	26,045,800	28,892,600	31,510,600
700Mbps	4,422,000	11,316,800	16,461,500	23,153,900	27,821,200	31,223,500	34,197,900
800Mbps	4,741,000	12,051,600	17,598,900	25,047,000	30,045,400	33,553,300	36,886,300
900Mbps	5,060,000	12,786,400	18,737,400	27,212,900	33,343,200	35,882,000	37,594,700
1Gbps	5,109,500	12,845,800	18,881,500	28,591,200	35,476,100	38,212,900	38,141,400
2.5Gbps	6,210,600	15,510,000	21,659,000	32,795,400	40,164,300	45,928,300	47,784,000
5Gbps	7,634,000	18,709,900	26,197,600	37,904,900	49,173,300	50,230,400	55,073,700
7.5Gbps	9,059,600	22,202,400	31,604,100	47,103,100	59,615,600	62,621,900	67,529,000
10Gbps	10,485,200	26,185,500	36,564,000	56,874,400	72,653,900	76,457,700	80,668,500

나) 이용요건

- 중앙행정기관 : 본부와 1차 소속기관간 연결
 - (기관요건) 17개 광역시도 중 8개 지역 이상에 거점이 있는 기관
 - . 거점의 적용기준은 정부조직법의 실제상 1차 소속기관으로 함
(산하기관, 연계기관 등 제외)
 - (노드요건) 한개 지역 노드당 백본회선 대역폭의 합이 45M 이상이며, 노드 하위에 기본회선이 5개 이상인 경우
 - ※ 단, 노드요건을 만족하는 기관중 8개 이상 거점요건이 충족 안되는 기관은 백본서비스 요금을 이용하되 기본회선 할인율을 적용
- 지방자치단체 : 17개 광역지자체와 기초자치단체간 연결
 - 광역시청 ↔ 군·구간, 도청 ↔ 시·군간 연결하는 회선
 - . 사업소 등 시·도 본청 직속기관도 백본서비스 대상기관에 포함

다) 거리/속도 제한

- 거리는 7단계, 속도는 2M부터 10G까지 15단계로 구성
 - 단, 중앙행정기관은 45Mbps이하 회선을, 지방자치단체는 2Mbps이하 회선에 대하여 인터넷전화 등 음성전용으로 한정사용

- 회선속도는 사업자가 이용기관에 설치한 전송장비와 통신국사에 설치된 전송 장비간 논리적 채널을 기준

라) 이용요금 할인

- 장기계약 할인

구분	2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할인율	20%	30%

- 장기계약할인은 다량이용 또는 다회선이용 할인과 중복 적용

- 계약기간 만료전 해지시 할인반환금을 부과합니다.

* 할인반환금=(할인전 월이용료×사용개월수)×(계약기간 할인율-사용기간 할인율)

- 다량이용 할인(부가세전 월 납부액 기준 이용요금 할인)

구분	1억원이상	2억원이상	3억원이상	4억원이상	5억원이상	6억원이상	7억원이상
할인율	10%	20%	30%	40%	50%	60%	70%

- 다회선이용 할인(이용회선수 기준 이용요금 할인)

구분	10회선이상	20회선이상	30회선이상	40회선이상	50회선이상	60회선이상	70회선이상
할인율	10%	20%	30%	40%	50%	60%	70%

* 다량이용 할인과 다회선이용 할인은 중복 적용 불가(선택 적용)

* 다량이용 할인과 다회선이용 할인은 이용서비스별 요금납입 책임자를 기준으로 적용
(단, 고객요청에 의하여 여러 개의 요금청구서로 분리 청구되는 경우는 청구서 단위로 적용)

* 다회선 이용에 따른 할인율 산정시 다음 회선은 제외하여 산정
(단, 다회선 이용에 따른 할인율 산정에는 제외 하되, 전체 할인율은 적용)
 - 2Mbps 회선 (음성 전용)
 - 지방자치단체 본청 직속기관인 사업소 등의 회선
 - 동일한 상위 노드와 하위노드간의 백업/부하 분산용 회선

4) CCTV 전송서비스

가) 감면요금표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속도체계 (Mbps)	계약기간							
	무약정		3년 약정		5년 약정			
	신규계약	재계약	신규계약	재계약	신규계약	재계약	신규계약	재계약
10Mbps	188,100	188,100	130,900	90,200	82,500	57,200	79,200	55,000
20Mbps	225,500	225,500	157,300	108,900	100,100	68,200	94,600	66,000
30Mbps	262,900	262,900	183,700	126,500	116,600	80,300	110,000	77,000
40Mbps	300,300	300,300	210,100	144,100	133,100	91,300	126,500	88,000

50Mbps	337,700	337,700	235,400	162,800	149,600	102,300	141,900	99,000
60Mbps	376,200	376,200	262,900	181,500	167,200	114,400	158,400	110,000
70Mbps	413,600	413,600	289,300	199,100	183,700	125,400	173,800	121,000
80Mbps	451,000	451,000	315,700	217,800	200,200	137,500	189,200	132,000
90Mbps	488,400	488,400	341,000	235,400	216,700	148,500	205,700	144,100
100Mbps	525,800	525,800	367,400	254,100	233,200	160,600	221,100	155,100

※ 어린이보호용 CCTV는 어린이보호구역, 도시공원, 놀이터 등에 적용

※ 장치사용료 : 8,800원/월, 설치비 : 11만원/1회(개통, 설치장소, 규격 변경 시 청구)

나) 이용요건

- CCTV서비스는 인입선을 공중(가공)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기관과 별도 협의를 통해 설치비용 중 일부를 요금에 반영
 -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입선을 지중화 하는 경우
 - CCTV설치구역이 산간오지, 도서 해안지역 등 설치가 어려운 지역

다) 이용요금 할인

- 다량이용 할인(부가세전 월 납부액 기준 이용요금 할인)

구분	5백~1천만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3억원	~5억원	~10억원	~15억원
할인율	2%	3%	4%	6%	8%	10%	12%	15%

- 다회선이용 할인(이용회선수 기준 이용요금 할인)

구분	3~9회선	10~49회선	50~99회선	100~399회선	400~699회선	700~999 회선	1,000회선 이상
할인율	4%	6%	7%	10%	12%	13%	14%

※ 다량이용 할인과 다회선이용 할인은 중복 적용 불가(선택 적용)

※ 다량이용 할인과 다회선이용 할인은 이용서비스별 요금납입 책임자를 기준으로 적용
(단, 고객요청에 의하여 여러 개의 요금청구서로 분리 청구되는 경우는 청구서 단위로 적용)

5) SLA

기본/백본/CCTV 전송 회선서비스 이용시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지침서의 SLA 체계에 따라 보상기준을 적용함

차. 초, 중, 고등학교에 학생들의 학습 및 학사행정업무를 목적으로 한 회선으로 교육청과 연결하여 사용하는 전용회선의 경우

- 감면대상회선 : 초, 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와 교육청간을 연결하는 회선

- 전용회선 방식 감면요금표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구분 (월액)	시내	시외					
		30km 이내	50km 이내	100km 이내	200km 이내	300km 이내	300Km 초과
512Kbps	180,730	412,500	576,400	969,100	1,312,300	1,541,100	1,664,300
1 Mbps	296,450	547,800	764,500	1,287,000	1,742,400	2,044,900	2,208,800
2 Mbps	415,030	913,000	1,273,800	2,143,900	2,904,000	3,410,000	3,680,600
4 Mbps	440,000	1,178,100	1,655,500	2,794,000	3,781,800	4,436,300	4,797,100
5 Mbps	458,260	1,363,560	1,913,230	3,226,960	4,367,660	5,123,800	5,539,600
6 Mbps	476,630	1,549,130	2,170,960	3,660,030	4,953,630	5,811,300	6,282,100
8 Mbps	495,000	1,734,700	2,428,800	4,093,100	5,539,600	6,498,800	7,024,600
10 Mbps	576,730	2,013,000	2,814,900	4,742,100	6,418,500	7,530,600	8,140,000
15 Mbps	940,940	2,700,500	3,778,500	6,362,400	8,609,700	10,109,000	10,921,900
20 Mbps	1,110,780	3,393,500	4,743,200	7,983,800	10,805,300	12,685,200	13,703,800
25 Mbps	1,386,770	4,082,100	5,704,600	9,606,300	12,998,700	15,261,400	16,485,700
30 Mbps	1,662,760	4,775,100	6,668,200	11,226,600	15,194,300	17,839,800	19,267,600
35 Mbps	2,059,200	5,468,100	7,632,900	12,846,900	17,388,800	20,417,100	22,049,500
40 Mbps	2,162,160	6,155,600	8,597,600	14,469,400	19,584,400	22,993,300	24,831,400
45 Mbps	2,443,980	6,848,600	9,563,400	16,089,700	21,777,800	25,571,700	27,613,300
50 Mbps	2,492,600	7,163,200	10,029,800	16,830,000	22,776,600	26,726,700	28,875,000
55 Mbps	2,516,910	7,475,600	10,462,100	17,561,500	23,767,700	27,889,400	30,131,200
60 Mbps	2,733,170	7,782,500	10,895,500	18,293,000	24,756,600	29,052,100	31,385,200
65 Mbps	2,941,840	8,093,800	11,331,100	19,023,400	25,747,700	30,213,700	32,640,300
70 Mbps	3,188,900	8,406,200	11,764,500	19,754,900	26,737,700	31,378,600	33,894,300
75 Mbps	3,397,460	8,717,500	12,196,800	20,484,200	27,728,800	32,540,200	35,150,500
80 Mbps	3,644,630	9,029,900	12,632,400	21,215,700	28,719,900	33,702,900	36,404,500
85 Mbps	3,891,690	9,341,200	13,065,800	21,947,200	29,708,800	34,864,500	37,659,600
90 Mbps	4,100,360	9,653,600	13,499,200	22,676,500	30,699,900	36,027,200	38,913,600
95 Mbps	4,347,420	9,964,900	13,934,800	23,409,100	31,691,000	37,189,900	40,169,800
100 Mbps	4,372,720	10,271,800	14,367,100	24,138,400	32,681,000	38,353,700	41,426,000

155 Mbps	5,321,910	13,697,200	19,126,800	32,178,300	43,555,600	51,142,300	55,227,700
622 Mbps	5,862,780	15,240,500	23,886,500	39,166,600	55,735,900	67,775,400	73,112,600
1 Gbps	7,875,450	20,269,700	31,770,200	52,090,500	74,127,900	90,141,700	97,240,000

※ 전용 접속방식 : 512Kbps, 1Mbps, 2Mbps, 45Mbps, 155Mbps, 622Mbps

※ Ethernet 접속방식 : 2Mbps 부터 제공

※ 이용기간 : 3년 장기계약으로 체결해야 함, 계약을 원치않을 경우에는 전용회선 또는 Metro Ethernet 회선의 요금을 적용함)

○ 위약금(3년 장기계약 해지에 대한 위약금)

구분	위약금
1개월 ~ 18개월내에 해지	6개월 이용요금 + 설치비 보상
18개월 ~ 36개월내에 해지	3개월 이용요금 + 설치비 보상

※ 단, 동일 문제사항에 대하여 이용기관이 사업자에게 3회 이상 조치요구를 공문으로 했을 때 합당한 사유 없이 조치하지 않을 경우 이용기관이 위약금 보상없이 해지할 수 있음

카. 유비쿼터스 요금제

○ 감면대상회선 : 국가기관, 지자체 등이 유비쿼터스 도시 구축과 연계하여 공공복지, 치안, 방범 등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회선

○ ITS용 전용회선 서비스 (단위:원, 부가세 포함)

구분 (월액)	시내	시 외					
		30km 이내	50km 이내	100km 이내	200km 이내	300km 이내	300km 초과
9.6Kbps	45,650	140,580	196,350	312,400	378,180	423,720	457,710
64Kbp	87,670	270,050	377,080	600,050	726,220	813,890	879,010
256Kbp	164,670	507,320	708,290	1,127,170	1,364,110	1,528,670	1,651,100
512Kbp	228,910	705,320	984,610	1,566,840	1,896,290	2,125,090	2,295,150
2Mbps	399,080	1,229,690	1,716,550	2,731,630	3,306,050	3,704,910	4,001,470

2. 요금 할인

※ 요금 할인을 적용할 경우, 부가세를 제외한 회선전용료 대상으로 할인을 적용 후 최종금액에 대하여 부가세 포함

※ 양자암호서비스는 요금 감면 및 할인을 적용하지 아니함

가. 다회선 할인

○ 시내전용회선

회선수	30,001~40,000 회선	40,001~60,000 회선	60,001~150,000 회선	150,001 회선 이상
할인율	4%	5%	6%	15%

○ 시외전용회선

회선수	5~9 회선	10 회선이상
할인율	5%	10%

○ 할인대상 및 할인율

- 케이티 전용회선을 기준회선수 이상으로 장기이용하는 경우, 해당 전용 회선료에 각각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할인

○ 적용방법

- 할인은 매월 1일 회선수 기준으로 요금납입책임자별로 적용함
- 타할인제도의 적용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할인 적용
- 요금감면회선은 할인을 적용하지 않음

나. 다량이용 할인

○ 대상 및 할인율

납입요금 (부가세전)	3 천만원~ 5 천만원미만	5 천만원~ 2 억원미만	2 억원~ 5 억원미만	5 억원~ 20 억원미만	20 억원이상
할인율	2%	3%	4%	5%	6%

○ 적용방법

- 매월 시내, 외 청구금액(증감액제외)을 기준으로 요금납입책임자별로 적용함
- 시내, 시외회선 단위별로 회선전용료를 할인함
- 통신망 통합기관등 요금감면회선은 적용하지 않음
- 타할인제도의 적용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할인 적용

다. 장기계약 할인

- 대상회선 : 고속급(128Kbps)이상 회선
- 계약기간별 할인율

구 분	1년	3년	5년
할인율	3%	5%	7%

○ 적용방법

- 계약기간 변경시
 - 계약기간 만료전 변경시 변경시점의 익월 1일부터 새로운 할인율 적용
 - 3~5년 계약회선을 1~3년으로 기간을 단축할 때 위약금 부과
- 계약기간 만료전 해지시
 - 장기계약기간 미준수에 따른 할인 반환금 부과
- 계약기간 만료후 할인율 적용
 - 이용고객이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별도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 계약은 1년 단위로 자동연장됨
 - 자동 연장된 계약기간 중에는 기존 계약기간 할인율이 적용되며, 자동 연장기간중 해지시 위약금은 부과되지 않음
- 요금감면회선은 할인율 적용하지 않음
- 타 할인제도의 적용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할인 적용이 가능하나 시외장기할인과는 중복적용하지 않음

※ 할인 반환금 산식=(할인전 월이용료 X 사용개월수) X (계약기간 할인율 - 사용기간 할인율)

라. 시외장기 할인 (2005.7.31 이전 가입회선에 한함)

○ 대상 및 할인율

구 분	1년경과	3년경과	5년경과
할인율	1%	2%	3%

○ 적용방법

- 기간산정은 개통일로부터 매월1일 기준으로 함
- 타 할인제도의 적용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할인 적용이 가능하나 장기계약 할인과는 중복적용하지 않음
- 요금감면회선은 할인율 적용하지 않음

마. 예비회선 할인

- 대상회선 : 56/64Kbps이상 회선
- 적용 방법
 - 주회선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하여 설치장소기준 동일구간 또는 우회용 예비회선을 신청하는 경우
 - 요금감면 및 추가 할인은 적용하지 아니함
- 할인율 : 시내 40%, 시외 50%

바. 전용회선 모니터 고객 할인

- 개 요

주식회사 케이티 전용회선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모니터 활동고객으로 선정된 경우 해당 회선에 대해 할인을 해주는 제도
- 선정기준
 - 10회선 이상 또는 월 33백만원(부가세포함) 이상 고객으로서 회선 운용실태 분석에 필요한 회선 또는 통신망의 고도화 등 품질개선에 관한 제안서 제출 고객
 - 기타 이용제도 및 불편사항 등 개선이 필요한 정보제공 고객
- 할인율 : 회선전용료의 20% 이내. 단, 6M 이상 회선은 20% 이내에서 추가로 할인